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지급대상에 대한 근거규정 및 기준 명확화(안 제1조)

○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(안 제3조)

-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31조 →「지방세징수법」제25조

○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(안 제9조)

-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제90조제3항 및 제4항 →
「지방회계법 시행령 」제36조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『지방세징수법』, 『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』등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2018. 8.22. ~ 2018. 9.10.(20일간)〕

○ 규제심사 : 심사 대상이 아님〔기획감사실-5977(2018. 8. 9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5393(2018. 8.14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상 설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,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의 예외사항과 지급방법 등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세입 증대와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